

성 평 등 가 족 부

제 호

년 월 일

수 신 ○○○○검찰청

제 목 공개명령청구 요청

법률 제11572호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 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명령청구를 요청합니다.

공개청구 대상자	성 명		
	주민등록번호	-	외국인인 경우: 국적 · 여권번호, 외국인 등록번호(외국인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에 는 생년월일) 외국국적동포인 경우: 국적·여권번호, 국내 거소 신고번호(국내거 소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)
	주 소	(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,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)	
죄 명		사건번호	
열람결정(또는 열람명령)기관	국가청소년위원회	결정일자	
	○○○○법원	선고일자	
열람기간			
공개되는 신상정보			

붙임: 1. 판결문 사본 1부

2.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문 사본(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람대상자로 결정한 자만 해당합니다) 1부

3. 공개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요청 이유서 1부

○○○○검찰청

년 월 일

수 신: ○○○○법원

제 목: 공개명령청구

위와 같이 공개명령청구의 요청이 있는 바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공개명령을 청구합니다.

검사

(인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공개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요청 이유서